「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2015. 11. 19일 시행한「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13조)

-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정비대상 조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하는 것임.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